

의안번호	2206157
의 퇴 인	서미화 의원
회 답 일	2024.12.30.
추계번호	24C5723

장애여성지원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 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정책종합 계획의 수립과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 2,600만원(연평균 2,500만원) 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106	—	—	—	—	106	21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4	4	4	4	4	20	4
합 계	110	4	4	4	4	126	25

주: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 장애여성교육진흥원,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존 사업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제외된 금액으로, 이를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장애여성 정책종합계획)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여성 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7조(장애여성 정책조정위원회)	(제1항)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여성정책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8조(실태조사)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여성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9조(교육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취업과 진로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장애여성의 취업과 진로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및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0조(모성 보호와 보육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모성보호와 보육 여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산전·산후 건강 관리, 출산비용 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육아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 자녀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1조(성·재생산 건강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유지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12조(고용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이루도록 장애여성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훈련, 직종 개발,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13조(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학대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14조(성인권 교육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성인권을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 등에 따른 특성이 반영된 성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5조(정신장애여성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여성(「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여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16조(고령장애여성 지원)	(제1항) 국가는 고령장애여성(60세 이상인 장애여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17조(장애여성 가족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원하는 가족을 이루어 평등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그 가족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여성 가족 인식개선 지원, 장애여성 가족 돌봄 지원, 장애여성 가족 사례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13	안 제18조(장애여성 문화예술활동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문화예술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여성 예술인 또는 장애여성 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19조(장애여성 단체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하 “장애여성단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20조(국제협력 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국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공동연구 개발 등 장애여성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21조(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	(제1항) 국가는 국민의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22조(장애여성교육진흥원)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여성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23조(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조(장애여성정책종합 계획)	○	○ 최근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7조(장애여성정책조정 위원회)	○	○ 최근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3	안 제8조(실태조사)	X	○ 실시 중
4	안 제9조(교육 지원)	X	○ 실시 중
5	안 제10조(모성보호와 보육 지원)	X	○ 실시 중
6	안 제11조(성·재생산 건강 지원)	X	○ 실시 중
7	안 제12조(고용 지원)	X	○ 실시 중
8	안 제13조(성폭력·성매매· 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	X	○ 실시 중
9	안 제14조(성인권교육 지원)	X	○ 실시 중
10	안 제15조(정신장애여성 지원)	X	○ 실시 중
11	안 제16조(고령장애여성 지원)	X	○ 실시 중
12	안 제17조(장애여성 가족 지원)	X	○ 실시 중
13	안 제18조(장애여성 문화예술 활동 지원)	X	○ 실시 중
14	안 제19조(장애여성단체 지원)	X	○ 실시 중
15	안 제20조(국제협력 등)	X	○ 실시 중
16	안 제21조(장애여성성 인권교육진흥원)	X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7	안 제22조(장애여성교육 진흥원)	X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8	안 제23조(장애여성종합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X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비용은 보건복지부 소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23년에 9,900만원의 예산을 집행
-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준용하여 민간위원은 15명으로 위촉되고, 연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회의수당은 25만원인 것으로 가정
 - 회의장소 임차료나 지원인력 등 부대경비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장애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8조), 교육 지원(안 제9조), 모성보호와 보육 지원(안 제10조), 성·재생산 건강 지원(안 제11조), 고용 지원(안 제12조),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안 제13조), 성인권 교육 지원(안 제14조), 정신장애여성 지원(안 제15조), 고령장애여성 지원(안 제16조), 장애여성 가족 지원(안 제17조), 장애여성 문화예술활동 지원(안 제18조), 장애여성단체 지원(안 제19조), 국제협력(안 제20조)은 현재 관련 유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재정수반요인	현행 사업(2024년)
실태조사(안 제8조)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1,242백만원
교육 지원(안 제9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1,771백만원
모성보호와 보육 지원(안 제10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761백만원

제정수반요인	현행 사업(2024년)
성·재생산 건강 지원 (안 제11조)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 8,442백만원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335백만원 장애친화산부인과 사업: 750백만원 장애인건강관리사업: 490백만원
고용 지원 (안 제12조)	장애인일자리지원: 222,695백만원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안 제13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3,172백만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6,832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3,254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 3,195백만원
성인권교육 지원 (안 제14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692백만원
정신장애여성 지원(안 제15조)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105,590백만원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19,979백만원
고령장애여성 지원(안 제16조)	장애인활동지원: 2,284,604백만원
장애여성 가족 지원(안 제17조)	장애아동가족지원: 194,047백만원
장애여성 문화예술활동 지원 (안 제18조)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2,544백만원
장애여성단체의 지원(안 제19조)	장애인단체지원: 6,843백만원
국제협력 등(안 제20조)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 66백만원

주: 기존 사업 및 유사사업을 준용하여 제시

자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¹⁾ 전망치를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안 제21조), 장애여성 교육진흥원(안 제22조),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안 제23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진흥원 및 지원센터 설치 여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운영사업 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한 지원센터 지정 기준, 진흥원 및 지원센터의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10. 기준, 단위: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의 수립과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가.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의 수립

- 제정안에 따라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2026년 기준 1억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23년에 9,900만원의 예산을 집행
 - － 2026년 첫 해에만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표 3]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106	－	－	－	－	1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위촉직)을 15명 위촉하여 매년 1회씩 회의를 개최하는 데 연간 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민간위원 수는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024년 기준 민간 위촉위원 15명)를 준용하여 15명으로 가정
 - －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비용의 경우 회의장소 임차료, 지원인력 및 운영비 등에 대한 부대경비가 소요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수당 비용만 추계

- 회의 횟수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준용하여 연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²⁾
 -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회의수당은 25만원인 것으로 가정하되,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4] 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7조)	4	4	4	4	4	20

주: 실제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수 및 회의개최 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추계 결과

- (일부 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의 수립과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 2,600만원(연평균 2,5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106	—	—	—	—	106	21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4	4	4	4	4	20	4
합 계	110	4	4	4	4	126	25

주: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 장애여성교육진흥원,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존 사업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제외된 금액으로, 이를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2024년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참고하여 연 1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nabo.go.kr